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0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김재원·김준형·서미화

서영석・조 국・이해민

서왕진 · 신장식 · 김선민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공공체육시 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기준(이하 "체육 시설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체육시설안전기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안전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9(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 ·신고체육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기준(이하 "체육시설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체육시설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안 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